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5268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성기강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C

2. D

3. E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준

변론 종결 2019. 5. 15.

판결 선고 2019.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450,000원 및 그 중,

가. 248,9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4.부터,

나. 나머지 3,5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30.부터 각 2019. 6.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785,362원 및 그 중 248,9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4.부터,58,885,362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울산 남구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공사로,2014. 8. 2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호텔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8. 25.부터2015. 7. 31.까지, 계약금액

6,25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7. 31.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8,415,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5.10. 28.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252,450,000원, 보험기간 2015.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청구 등

1)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이 사건 호텔의 객실 벽체 도배부분에서 뒤틀림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2. 및 2016. 4. 8. 이 사건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하자가 이 사건 호텔의 설계 및 선행 건축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거절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금청구

1)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해 이 사건 하자 보수 지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 및 2017. 11. 16. 현장실사 결과 248,900,000원을 지급보험금으로 산정하였다는 보험금 지급예정 안내를 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감정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17. 11. 27.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법원 2018가합550980(이송 전 이 법원 2017가단5223937),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의 감정인은 이 사건 하자의 원인 및 하자보수비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하였다.

1) 이 사건 호텔에서 객실 메인도어(현관문)과 슬라이딩도어를 개폐하고 옥상의 팬코일을 작동시키면서 진동을 측정한 결과, 도배 마감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진동은 조사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호텔의 칸막이 벽체는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었고, 스테드와 석고보드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나, 온도에 따른 수축 팽창으로 인해 석고보드가 맞닿는 부분에 유격이 생겨 도배의 뒤틀림이 발생하였다.

3) 위와 같은 온도 차이에 따른 유격 발생은 불가피하므로 이로 인한 도배 뒤틀림을 막기 위해서는 최종 마감인 도배에서 이를 잡아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인데, 원고가 석고보드 이음부에 시공한 한랭사 및 퍼티작업만으로는 석고보드의 변위에 의한 도배지 손상을 막을 수 없다.

4) 이 사건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인 석고보드 조인트 도배시공 부분에 조절줄눈을 두어 도배 뒤틀림을 방지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면 307,785,36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호텔에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보수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필요한 보수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하자의 보수비 307,785,362원이 보험가입금액 252,450,000원을 초과 하므로,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위 252,45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52,450,000원 및 그 중 248,9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5. 4.부터, 나머지 3,55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30.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남준우, 판사 김경준